

**미래에셋자산운용펀드 2.16 변경 시행 규약 및  
설명서 정정대비표(안)**

# 목차

1. 이익배분관련소득세법시행령개정사항 반영
2.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삭제
3.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삭제 및 해외펀드 비과세혜택 종료, 해외펀드 상계과세 관련 내용 반영
4. 자산운용보고서 시행령92조 개정사항반영
5.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
6. 시리즈펀드 경고문구 및 투자위험 추가
7. 업종대표 주식의 정의 보완 설명
8. G펀드 해외투자 및 비교지수 설명 추가
9. 해외위탁운용사 이관
10. 운용역 변경
11. 결산Update

# 1. 이익배분관련소득세법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대상투자신탁: 국내/해외투자 전체 투자신탁

● 변경내용

## - 집합투자계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33조 (이익분배)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p>	<p>①-----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사항 반영

##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p>①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p>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사항 반영

## 2.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삭제

- 대상투자신탁: 국내투자 전체 투자신탁
- 변경내용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나. 과세</p>	<p>(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기구에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p> <p>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아래의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p> <p><b>[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b>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p> <p>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p> <p>나.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p> <p>다.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p> <p>(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p>	<p>(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u>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u>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p>(2)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u>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u>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p>	<p>증권거래세 면제혜택 종료에 따른 관련문구 삭제 및 과세관련 문구 수정</p>

등의 매매, 평가 손실이 과세대상인 채권이자, 채권 매매/평가 이익,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투자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삭제 및 해외펀드 비과세혜택 종료, 해외펀드 상계과세 관련 내용 반영

● 대상투자신탁: 해외투자 전체 투자신탁

● 변경내용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p>(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기구에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p> <p>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아래의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5px;"> <p><b>[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b>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p> <p>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p> <p>나.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p> <p>다.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p> </div> <p>(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u>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p> <p><u>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u></p> <p><u>*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gt;1 이면 1, 환급비율 &lt;0 이면 0으로 함</u></p> <p>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p>(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증권거래세 면제혜택 종료에 따른 관련문구 삭제 및 과세관련 문구 수정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 평가 손실이 과세대상인 채권이자, 채권 매매/평가 이익,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세대상인 환차익, 채권이자, 채권 매매/평가 이익, 주식배당 또는 비상장주식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외상장주식등의 매매, 평가에 따른 손실이 더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이 평가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 (따라서,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투자자인

수익자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p>법인의 결산 시점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 <b>기준가격</b>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b>매입</b> 혹은 <b>환매</b>시 적용됩니다.</p> <p>※ <b>과표기준가격</b>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b>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b>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b>비과세대상자산 -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b>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p> <p><b>(4)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b>  <b>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b></p> <p>※ <b>기준가격</b>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b>매입</b> 혹은 <b>환매</b>시 적용됩니다.</p> <p>※ <b>과표기준가격</b>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b>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b>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b>비과세대상자산 -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b>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p>해외펀드 상계과세내용 반영</p>
--	---	---	-----------------------

#### 4. 자산운용보고서 시행령92조 개정사항반영

- 대상펀드 : 국내/해외 전체 투자신탁

- 변경내용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50조</b> (공시 및 보고서 등)</p>	<p>①~④ (생략)</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li> <li>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li> </ol>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p> <p>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u>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u></p> <p>⑧~⑫ (생략)</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u>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u>.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⑫ (현행과 같음)</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70조 변경 사항 반영 위함</p>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	-----	-----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사항

<p>(2) 자산운용보고서</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 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 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 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li> <li>•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li> <li>•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 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li> <li>•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 로 정하는 매매회전율</li> </ul> <p>-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 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 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 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 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 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li> <li>•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li> <li>•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 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li> <li>•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 로 정하는 매매회전율</li> <li>• <u>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u></li> </ul> <p>-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p>	<p>자산운용보고서 공시방법의 변경 (전자우편 발송 내용 추가)</p>
--------------------	--	---	---

	<p>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li> <l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li> <li>•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li> <li>•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li> </ul>	<p>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li> <l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li> <li>•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li> <li>•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li> </ul>	
<p>(3)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u>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u>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u>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 다만, <u>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u>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 5. 투자중개업자 문구 수정

- 대상투자신탁 : 국내/외 투자신탁
- 변경내용
  - 투자설명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증권의 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할 것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선정방법 등 -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자본시장법 용어 적용 및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장내과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	--	--

## 6. 시리즈펀드 경고문구 및 투자위험 추가

### ● 대상투자신탁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주식)

### ● 변경내용

####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을 법 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 및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p> <p><b>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b></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을 법 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 및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p> <p><b>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b></p> <p><b><u>또한 본 집합투자기구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의 시리즈펀드로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와 투자전략이 동일할 뿐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이므로 설정 및 해지에 따른 자금유출입의 차이가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와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u></b></p>	시리즈펀드관련 경고문구추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투자위험	<신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style="background-color: #ffc107;"> <td style="width: 10%;">세부 구분</td> <td>투자위험의 주요내용</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3e0;"><b>시리즈펀드</b></td> <td>본 집합투자기구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의 시리즈펀드로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와 투자전략이 동일할 뿐 별개의 집합투자기</td> </tr> </table>	세부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시리즈펀드</b>	본 집합투자기구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의 시리즈펀드로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와 투자전략이 동일할 뿐 별개의 집합투자기	
세부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시리즈펀드</b>	본 집합투자기구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의 시리즈펀드로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와 투자전략이 동일할 뿐 별개의 집합투자기						

		<p>구이므로 설정 및 해지에 따른 자금유출입의 차이가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투자회사(주식)와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내용 추가	

## 7. 업종대표 주식의 정의 보완 설명

### ● 대상투자신탁: 업종대표펀드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변경내용-

####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p>※ 업종대표 주식이란? 주식중 GICS 분류에 따른 각 산업별 시장점유율 또는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 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p>	<p>※ 업종대표 주식이란? 주식중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p>	투자자에게 업종 대표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

### ● 대상투자신탁: 지역업종대표펀드

### ● 변경내용

####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업종대표 주식이란? 주식중 GICS 분류에 따른 각 산업별 시장점유율 또는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 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 업종대표 주식이란? 주식중 <u>국가별로</u>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u>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u>	투자자에게 업종 대표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
----------------	--	--	-------------------------------

## 8. G펀드 해외투자 및 비교지수 설명 추가

### ● 대상투자신탁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 ● 변경내용

####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③ <생략> ④ <신규>  ⑤ <신규>	①~③ <생략> ④ <u>해외 투자는 운용전략상 펀드의 규모가 상당 수준이 될 경우에 그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해외 자산에는 상당 기간 투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u>  ⑤ <u>비교지수: KOSPI</u>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비교지수로 KOSPI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일부 해외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때문에 비교지수와 상이한 성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u>&lt;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gt;</u> <u>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KOSPI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u>	해외주식투자전략에 대한 문구추가, 일부 해외투자에 따른 비교지수(KOSPI)와의 성과차이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	--

## 9. 해외위탁운용사 이관

- 대상투자신탁: 유럽 및 글로벌 투자펀드

미래에셋우리아이 3 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 G1 호(주식)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변경내용

### - 집합투자계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4조의 3(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1.미래에셋자산운용(영국)(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2.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1.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해외위탁운용사 변경

- 변경내용

###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미래에셋자산운용 (영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영국 위탁운용사 부분 삭제	해외위탁운용사 변경

	설립일	2007년 3월 21일		
	회사주소	19th Fl. 40 Bank Street, Canary Wharf, London E14 5DS 전화번호:(44)-20-7715-9900 팩스:(44)-20-7715-9901		

## 10. 운용역 변경

### 국내투자펀드 운용전문인력 변경 (시행일 2010.02.11)

#### - 서재형 전무 → 손동식 대표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법인전용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손동식 대표 → 박주평 본부장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해외투자펀드 운용전문인력 변경 (시행일 2010.02.16)

#### - 이헌복 본부장 → 목대균 과장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송진용 과장 → 목대균 과장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11. 결산Update

● 대상펀드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주식)
-----------------------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